

영주시 공고 제2024 - 959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영 주 시 장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18조제1항)

- 1년 이상 3년 미만 재직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재직 16일 부여

나.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 및 기간 확대(안 제23조제5항)

-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 : 5세 이하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육아시간 사용기간 : 24개월 → 36개월

다. 포상휴가 연간 일수 확대(안 제23조제9항) : 5일 → 7일

- 라.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 시 1회 휴가기간을 5일 이상 10일 이내에서 2일 이상 10일 이내로 변경(안 제23조제10항)
- 마. 보육휴가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안 제23조제14항)
 - 보육휴가 대상 자녀의 연령 : 5세 이하 → 8세 이하
 - 사용 조건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단서 삭제
- 바.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안 제23조제13항)
 -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를 셋째 자녀부터 1일씩 추가하여 부여함
- 사.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안 별표 3) : 1일 → 3일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 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총무과장)

연락전화 : (054)639-6252

E-mail : bylus@korea.kr, FAX : (054)639-6259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47조”를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5
2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에게”를 “공무원은”으로, “허가하되”를 “사용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하며, 같은 항 및 제8항 중

“받을”을 각각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5일”을 “7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후단 중 “5일”을 “2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을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을 더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 1일을 더한다.

제23조제14항 중 “5세”를 “8세”로,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연간 5일 이내의”를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 3의 사망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1일”을 “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경우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복무선서) ① 영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② · ③ (생략)</p> <p>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연가 일수</th> </tr> </thead> <tbody> <tr><td>1개월 이상 1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1</td></tr> <tr><td>1년 이상 2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2</td></tr> <tr><td>2년 이상 3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4</td></tr> <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5</td></tr> <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7</td></tr> <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20</td></tr> <tr><td>6년 이상</td><td style="text-align: center;">21</td></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르되, 연월일</p>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p>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p> <p>-----</p> <p>-----</p> <p>-----</p> <p>제2조(복무선서) ① 영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연가일수) ① -----</p> <p>-----</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재직기간</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연가 일수</th> </tr> </thead> <tbody> <tr><td>1개월 이상 1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1</td></tr> <tr><td>1년 이상 2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5</td></tr> <tr><td>2년 이상 3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5</td></tr> <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6</td></tr> <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17</td></tr> <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 style="text-align: center;">20</td></tr> <tr><td>6년 이상</td><td style="text-align: center;">21</td></tr> </tbody> </table> <p style="margin-top: 10px;">② -----</p> <p>-----</p> <p>-----</p>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5	2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5																																
2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3. (생략)

③ (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은 -----

----- 사용할 수 있으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삭제

④ (생략)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⑦ (생략)

⑧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이 재해·재난·축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얻을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36개월-----

----- 사용할 -----.

⑥·⑦ (현행과 같음)

⑧ -----

----- 사용할 -----.

⑨ -----

----- 7일 -----

⑩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추가 2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1회 휴가기간은 5일 이상 10일 이내로 하되 소급 및 이월 사용은 할 수 없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휴가는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복무업무총괄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복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⑪·⑫ (생략)

⑬ 제1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⑩ -----

2일 -----

⑪·⑫ (현행과 같음)

⑬ -----

----- (둘째 자녀부터 자녀 1명당 1일을 더한다) -----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⑭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 ⑰ (생략)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 다만, 장애인 인 자녀가 있거나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 1일을 더한다.

⑭ 8세 -----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 .

⑮ ~ ⑰ (현행과 같음)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주요내용	<p>※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p>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견 제출자	소속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